

배포 일시	2022. 10. 12.(수)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 심지영 (044-201-3835)
		담당자	서기관 이보연 (044-201-3836)
			주무관 함경현 (044-201-3845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수입 이륜자동차 안전·성능기준 확보를 위해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

< 보도 내용('22.10.12, 매일경제) >

- ◆ “중국산 오토바이 수입사, 안전·성능검사도 회피의혹”... 결함시 사후관리 가능하다는 국토부 실측확인검사 생략
 - 중국 오토바이 제작자는 사후관리 시설을 갖추지 못함에도 수입사가 국내대리인 수입계약서를 제출하여 안전·성능검사를 회피 의혹
 - 환경부에는 현지 시설확인검사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음

-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기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 - 수입자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으므로 실측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수입 이륜자동차의 안전·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환경부와 협업하여 환경부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사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등을 특별 점검하고,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.
 - 아울러, 양 부처에 제출하는 국내대리인 수입계약서*는 부처 간 업무 공유·협조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입자의 자기인증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.

*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계약서,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 계약서